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7958

발의연월일: 2025. 2. 7.

발 의 자:정성호·천하람·박성준

소병훈 • 이병진 • 복기왕

김문수 · 박희승 · 주철현

안규백 • 이연희 • 윤후덕

최기상 · 채현일 · 임광현

의원(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조세지출과 지방세지출은 한번 도입되면 축소·폐지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가 재정의 지속가능성에도 중대한 영향을 끼침.

이에 따라 국가 재원의 효율적 운용과 재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조세지출과 지방세지출의 총계적 관점에서 국가 전체 조세·지방세 지출에 대한 관리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 국가재정운용계획 사항에 조세·지방세 지출 총량 및 감면율 관리계획을 추가하고, 국가재정운용계획 첨부서류에는 중장기 조세·지방세 감면 한도 관리 및 조세·지방세 지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계획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7조).

법률 제 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조세·지방세 지출 총량 및 감면율 관리계획

4의2. 중장기 조세·지방세 감면 한도 관리 및 조세·지방세 지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계획

부 칙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제7조(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 ① (생 략)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국가재정운용계획에는 다음	②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				
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u><신 설></u>	<u>5의2. 조세·지방세 지출 총량</u>			
	및 감면율 관리계획			
6. ~ 8. (생 략)	6. ~ 8.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국회에 제출	3			
하는 국가재정운용계획에는 다				
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u><신 설></u>	4의2. 중장기 조세·지방세 감			
	면 한도 관리 및 조세ㆍ지방			
	세 지출의 효율적 관리를 위			
	한 계획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④ ~ ① (생 략)	④ ~ ① (현행과 같음)			